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중 “국방관련 정보”를 “국방정책 관련 정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보안정책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안보정보담당관·보안암호담당관 및 검증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보기획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안보정보담당관 및 보안암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검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정보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국방분야 정보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3. 국방정보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4. 국방 정보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5. 국방분야 정보예산 관련 관계기관 협력 업무

6.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의 선발·운영 정책의 수립·발전

7. 주한 외국 무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8.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9. 국방분야 기상기후정보 정책의 수립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보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군 방첩정보의 수집·처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군 방첩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3. 국방방첩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4.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
5.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6.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대외협력
7. 방위산업 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법령·제도의 개선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9.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10.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

11. 국방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⑤ 보안암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3.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감독(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전군 보안감사의 총괄 및 조정·통제
 5. 국방 암호 발전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6. 군사기밀의 분류, 관리 및 공개 정책의 수립·발전
 7.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8. 군 정보통신망 외부기관 설치 조정·통제 및 보안대책 수립 업무
 9. 군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안정책 수립 업무
- ⑥ 검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군 관련 인원의 정보수집·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관련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

제9조제18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소통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조정
2. 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수립·운영(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핵추진잠수함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배분 업무
5. 핵추진잠수함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6. 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업무
7. 핵추진잠수함 사업 관련 홍보 업무

8.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의 획득·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조정

9.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분야 협력 업무 총괄
2. 국제기구와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비확산 국방분야 협력 업무 총괄
3. 국방부 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정 등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4.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정부의 정책 및 대외정세분석 업무

⑤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추진
2.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업무
3.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연구·발전
4.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안전규제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5.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

의 이행

6.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기관의 확보·운영에 관한 업무

⑥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687”을 “713”으로, 일반직 계 “679”를 “705”로, 고위공무원단 “18”을 “19”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을 “14”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을 “3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6”을 “226”으로,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6”을 “175”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방호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8”을 “8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90”을 “716”으로, 일반직 계 “682”를 “708”로, 고위공무원단 “18”을 “19”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을 “14”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을 “38”로, 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57”을 “58”로,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방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
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8”을
“228”로,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방호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
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
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6”을 “175”로,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
호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
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8”을 “80”으로 한다.

별표 5의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핵추진잠수함정 책기 획단(준속기한: 2029년 8월 14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
신주사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
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의2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인공지능정책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안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9년 8월 14일까지
정보보안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4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9년 8월 14일까지
정보보안정책관 안보정보담당관	5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2029년 8월 14일까지
정보보안정책관 보안암호담당관	5명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9년 8월 14일까지
정보보안정책관 검증지원담당관	10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6명)	2029년 8월 14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방보좌관) ①·② (생략)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1. ~ 6. (생략) 7. 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8. ~ 10. (생략) ④ (생략) <u><신설></u>	제2조(국방보좌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8.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제6조의2(정보보안정책관) ①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정보보안정책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안보정보담당관·보안암호담당관 및 검증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보기획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안보정보담당관 및 보안암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검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u>

로 보한다.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정보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국방분야 정보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3. 국방정보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4. 국방 정보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5. 국방분야 정보예산 관련 관계기관 협력 업무
6.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의 선발·운영 정책의 수립·발전
7. 주한 외국 무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8. 국방분야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9. 국방분야 기상기후정보 정책의 수립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보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군 방첩정보의 수집·처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군 방첩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
3. 국방방첩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4. 준법감찰기관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
5.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6.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대외협력
7. 방위산업 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법령·제도의 개선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
9.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10.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

11. 국방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
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⑤ 보안압호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
좌한다.

1. 국방분야 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군사보안 발전을 위한 법령
· 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3.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
· 감독(군사보안에 관련된 인
원의 신원조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전군 보안감사의 총괄 및 조
정·통제

5. 국방 압호 발전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6. 군사기밀의 분류, 관리 및 공
개 정책의 수립·발전

7.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
에 따른 국방부 보안심사위원
회의 운영 지원 업무

8. 군 정보통신망 외부기관 설
치 조정·통제 및 보안대책

수립 업무

9. 군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
웨어 보안정책 수립 업무

⑥ 검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정보보안정책관을 보
좌한다.

1. 군 관련 인원의 정보 수집·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관련 국방보안지원
단 업무의 지도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⑰ (생
략)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
의 수립·조정 및 유관부서와
의 협조

8.·9. (생 략)

⑲·⑳ (생 략)

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①·②
(생 략)

③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⑰ (현행
과 같음)

⑱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9. (현행과 같음)

⑲·⑳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4. 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 5. 국방 사이버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 15. (생략) ④ ~ ⑥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6. ~ 1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소통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조정 2. 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수립·운영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핵추진잠수함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배분 업무 5. 핵추진잠수함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6. 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업무 7. 핵추진잠수함 사업 관련 홍보 업무 8.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의 획득·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조정 9.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
---	---	--	---

획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분야 협력 업무 총괄

2. 국제기구와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비확산 국방분야 협력 업무 총괄

3. 국방부 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정 등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4. 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정부의 정책 및 대외정세분석 업무

⑤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추진

2.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업무

3.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연구·발전

4. 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 안전규제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5. 핵추진잠수함 관련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6.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기관의 확보·운영에 관한 업무

⑥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87	713	+26
·	·	·	
·	·	·	
·	·	·	
일반직 계	679	705	+26
고위공무원단	18	19	+1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	14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38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6	57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 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 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6	226	+10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 ·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 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 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6	175	+9
·	·	·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방호 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 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 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 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8	80	+2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90	716	+26
일반직 계	682	708	+26
고위공무원단	18	19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3	14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38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7	58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방호 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 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 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8	228	+10
행정주사·사서주사·방호주사 ·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 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 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6	175	+9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방호 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 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 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 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78	80	+2